

제328회 임시회

2014. 3. 13.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노광기 의원 외 6명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4년 3월 3일
- 회부일자 : 2014년 3월 13일

3. 제안이유

- 「영유아보육법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,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, ‘보육정보센터’를 ‘육아종합지원센터’로 명칭 변경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-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 정비(안 제5조)
- “보육정보센터” 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명칭 변경(안 제6조, 제12조)
-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문구 정비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현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명칭 변경하고,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변경하였으며,
-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용어, 문구를 정비한

것으로 일부개정에 따른 법리적, 내용적 문제 없음.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5조(구성)에서는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6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을 세부적으로 정비하여 보육서비스 제공 당사자인 “보육전문가”, “어린이집 원장”, “보육교사 대표”는 그 비율이 40%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, “관계 공무원” 15%이하, “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”가 전체위원의 45%이상인 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심의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,
- 안 제6조, 제12조에서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7조에 따라 기존의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명칭 변경하였음.